

##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

윤귀태<sup>1\*</sup>, 박영배<sup>2</sup>

<sup>1</sup>동의대학교 대학원 금융보험 재무부동산 학과 금융보험학 박사과정, <sup>2</sup>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Inheritance Tax by Individuals

Gui-tae Yun<sup>1\*</sup>, Young-bae Park<sup>2</sup>

<sup>1</sup>Dongu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anking and Insurance, Finance and Real Estate Ph.D student

<sup>2</sup>Professor of Banking and Insurance at Dongui University, Sanggye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 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제어** : 상속세, 공제 한도, 배우자공제, 유산세, 연부연납제도, 과세 이연제도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of inheritance tax on households in reality and to improve it if there is an unreasonable aspect compared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study conducted a one-on-one face-to-face survey on adults living in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for 31 days from 1<sup>st</sup> of September to 10<sup>th</sup> of October, 2022. The collected data was analysed using SPSS 25.0 version and noted that 1) they preferred the abolition of inheritance tax, but hoped to improve it when maintaining it, 2) it was necessary to expand the deduction limit, abolish spouse deductions, and 3) prefer the inheritance acquisition tax system.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y wanted to Extension of installment period of inheritance tax and introduce the tax deferred system..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perception that the overall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inheritance tax.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o provide the basis for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in Korea, which does not reflect reality.

**Key words** : Inheritance tax, deduction limit, spouse deduction, estate tax, Extension of installment period of inheritance tax, tax deferral system

\*Corresponding Author : Gui-tae Yun(6081ty@hanmail.net)

Received November 15, 2022

Accepted December 20, 2022

Revised November 28, 2022

Published December 28, 2022

## 1. 서론

상속세 존속론과 폐지론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들은 철학적, 경제 이론적 관점과 현실론에서도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재계, 학계 및 조세 정책가들도 상속세를 존속 또는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철학 혹은 분석요소와 채택한 방법 여하에 따라 그 결론이 다르게 도출되기 때문에 조세정책은 여러 가지 방안 중 그 나라와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과 조화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sup>1)</sup>에 관한 논란은 상속세 제도 설립 이후, 그 정당성과 함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개선방안이 계속 연구되고 있다(서정우, 2018). 상속세는 과연 합당한 세금인가? 이미 세계 여러 주요 국가에서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유산이 이전되면 해당 자산 가액만큼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고, 주 정부 50개 중 33개 주에서 상속세가 면제되고 있다. 2017년 미 하원 안은 2023년부터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개편안을 내놓았다(매일경제, 2017)[1]. 독일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승계받은 경우, 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등 보다 강화된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면 승계받은 자산의 100%를 공제한다. 주택공제의 경우 배우자 또는 생의 동반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100% 공제하고, 자녀의 경우 200㎡이하 부동산은 100% 공제한다(김유찬, 이유황, 2009)[2].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지가 급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 하자, 1988년, 1992년, 1994년, 2001년, 2003년에 걸친 세법개정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인하하였다. 1987년 이전에는 최저 10%에서 최고 75%까지 14단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6단계로 상속세 세율구조를 조정하였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5%이지만 실효세율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다(대한상공회의소, 2022)<sup>2)</sup>. 이러한 상속세 개선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상속세 폐지 혹은 유지, 특히, 유지의 경우 세율조정 등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여야 한다(조세일보, 2020)[3].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세수 상 폐지가 어렵다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세율조정 등 현실에 맞게 완화라도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조세일보, 2020)[3]. 더욱이,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1가구 소유 서민들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제는 1996년 개정골격에, 1999년에 상속세율만 상향 개정한 이후 변동이 없다. 또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9억 원을 고가 아파트로 지정했다<sup>3)</sup>. 2008년에는 9억이 넘는 아파트는 고가아파트라 했고, 중간가격 아파트가 약 4억8천만 원이었다. 2020년 현재 중간가격 아파트의 가격은 약 9억5천만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제는 1999년(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골격에다가 세율만 공제 후 과세표준 금액 50억 초과, 최고세율 45%→30억 초과 최고세율 50%로 세율만 상향 개정 적용함)에 개정된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볼 때, 1996년 최저임금이 1,275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9,160원으로 673.94% 인상되었다. 2020년 현재 상속세를 보면 공제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유산세, 연부연납기간, 과세 이연제도 미 도입 등 모두 1996년 개정된 것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의 개인별 인식에 대해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현행 상속제도의 불합리적인 면, 특히, 상속세의 폐지와 유지, 유지 시의 개선방안등을 제안을 통해 상속 세제의 현실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제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적 인식에 관한 연구로서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상속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상속세제도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한 최초의 논문으로 사회 전반에서 인식되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 상속세: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일반을 말한다.

2) 대한상공회의소(2014), "상속증여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참조(2014~2022년 현재)

3)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01호, 2009. 2. 4. 일부개정), 제156조 1항.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2.1 상속세 관련 이론

#### 2.1.1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제도이다(이태로, 한민수, 2016)[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sup> 또한, 헌법재판소는 상속세 제도가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 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헌법 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조세제도라고 결정하였다.<sup>5)</sup> 결론적으로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일반이다.

#### 1) 상속

먼저 상속이란 친족 적 신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 간에, 인정사망<sup>6)</sup> 및 실종선고로 인하여 법률상 정해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와 의무(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sup>7)</sup> 민법상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사망의 경우만을 상속의 개시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sup>8)</sup>

#### 2) 유증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을 타인(상속인 여부를 불문한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로서 법정상속보다 그 효력이 우선하며, 피상속인이

유증한 경우 수유자가 받는 재산은 지정상속분이 된다.<sup>9)</sup> 유증은 사인행위란 점에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생전 증여와 다르며,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sup>10)</sup>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언에 의한 유언자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란 점에서 상대방 있는 생전계약인 사인증여와도 다르다. 유증의 주요한 내용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유증 하는 경우이지만, 반드시 상속재산에 관하여 만 유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극재산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도 유증에 속한다.

#### 3) 사인증여

사인증여란 생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말한다.<sup>11)</sup> 사인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생여와 같으나, 실제로 재산을 감소 당하는 자는 증여자 자신이 아니라 상속인이라는 점에서 증여와 다르다. 따라서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sup>12)</sup>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사인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 4) 상속세의 과세 근거

상속세의 근거이론으로는 민법상 재산상속권의 법이론적 근거, 조세회피정산과 응부담에 따른 경제이론적 근거, 생의 출발점 평등과 인적자본 비과세 보완 및 권력이나 부의 집중억제의 정책론적 근거가 있다.<sup>13)</sup>

## 2.2 선행연구 고찰

### 2.2.1 상속세에 관한 선행연구

상속세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기존의 상속세제에 대한 유산취득 세 논의,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 부분적으로 이중과세 상속세 폐지 언급,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 문제, 부부간 상속세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주요 논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상증세법, 제1조.

5) 헌재 2002. 10. 31. 선고 2002헌바43 결정.

6) '인정사망'이란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이 일어나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가족관계 등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87조).

7) 민법 제1002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

8)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9) 최봉길, 최일주, 유용관, 상속증여세 실무, 한국세무사회, 2008, p.32.

10)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11)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

12)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

13) 최명근(2006), 「상속 과세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pp.15~22.

## 1) 유산 취득세 논의

최명근(2002)[5]은 조세 행정과 세수 기여도의 난이도만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의 유산 과세형의 유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나, 문제는 행정 편의성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1993년부터 금융자산의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었고, 국제청의 종합자산망(TIS)의 완성과「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으로 조세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취득 과세형은 납세자의 세금 절감에서 유리하나, 문제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일본은 “법정상속분 과세 방식에 의한 취득 과세형”의 채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2)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 부분적으로 이중과세 상속세 폐지 언급

박상우 외 1인(2009)[6]은 유산 과세형은 상속 과세를 정당화하는 기본적 기능인 부의 분산을 유도하는 기능은 적다고 주장하였다. 상속 과세를 지지하는 이론의 전제는 부의 분산으로 빈곤한 자의 자녀도 부자의 자녀와 차이 없이 평등하게 인생의 출발점을 제공하여 성공의 기회균등을 같이 제공하자는데 있다. 이러한 전제가 사회정의라고 본다면 상속세 제도는 부의 분산에 충실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취득 과세형은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키면 상속 과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유산 과세형은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켜도 적어지지 않는다. 즉, 유산 과세형은 여러 사람에게 분산을 유도하는 기능이 없다고 하였고, 우리나라 세제가 유가증권의 양도차익까지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부분적이지만 소득세와 상속세가 이중적으로 과세 되어 상속세의 폐지를 논의한다 해도 세수를 문제 삼아 과세유형의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

## 3)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 문제

이정길(2010)[7]은 상속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복잡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다 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 액 등 평가와 관련하여 신고전에 과세 관청이 시가를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 하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고납세제도로의 전환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면 모든 납

세자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조사만 수행하여 행정력을 줄일 수 있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행정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4) 부부간 상속세 문제

원종학(2012) 외 2인[8]은 우리나라도 배우자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 시 여러 가지 공제 범위 확대를 주장하였다. 증여가액 공제 한도를 배우자 간에는 현재의 10년 누적 6억 원보다 증가가 필요하고, 독일과 일본 같이 참조하여 주거 안정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주택 증여 시 별도의 공제제도를 두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배우자 간 미사용 공제금액 이월 승계’ 제도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와는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배우자 간에는 공유·동반의 관계이기에 참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5) 유산 취득세

안호영(2015) 외 1인[9]은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은 각자의 장단점을 갖는다.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은 각국이 처한 과세 환경이나 납세 의식과 관련하여 달라질 수 있다. 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은 첫째, 공평과세 측면에서 상속인은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상응하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과 둘째,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기능을 과세 근거로 함으로 세 부담과 관련된 부의 분산축진 측면과<sup>14)</sup> 셋째,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이라고 했다. 끝으로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면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일치시켜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의 장단점, 부부간 상속세 문제, 과세표준 산정방식개선

14) 동일한 누진세율일 경우 유산세방식이 유산 취득세방식보다 국가가 더 세금을 많이 거둘 가능성이 높다. 즉, 유산세방식은 상속재산을 분산하든 하지 않든 공동상속인 전체의 세 부담이 같다는 점에서 세부담의 차원에서만 보면 상속재산을 분산할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유산 취득세방식은 분산을하면 할수록 상속세 부담은 감소된다. 따라서 유산 취득세방식은 상속재산 분산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이 무시된다면 세 부담의 최저화와 관련지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에게 널리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산 취득세방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15)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을 하는 자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증여세가 상속세의 보완세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동일한 한 쪽 방향을 설정하여 누구를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지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 부분적으로 이중과세 상속세 폐지 등 기존의 상속세도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방안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개편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상속세는 쉽게 말해 부유세다.<sup>16)</sup> 부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거에는 극소수 부자에게만 부과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부과 과세 표준인 10억은 과거에는 아주 큰 재산이었으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제는 서울의 신규 20평대 아파트도 10억을 넘고 있으며, 30평대는 10억~20억대 이상이 많다.<sup>17)</sup> 부산, 인천, 대구 등 지방의 경우에도 웬만한 대도시는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의 상속세 등 세금의 과세표준은 1999년 이후 20년 이상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만 4배 이상 올랐다. 수 십년 간 변동 없는 세금부과 과세표준은 세금만 매우 올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다 상속세는 이미 세금을 다 납부한 재산에 대한 이중 부과세금이라는 것이다.<sup>18)</sup> 즉, 부지런히 벌고 아껴 쓰고 모아서 소득세, 보유세, 양도세, 및 증부세 등 세금을 이미 다 낸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를 위해 아껴 쓰고 저축을 한 것이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다 써버린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 상속세를 안 내고, 미래와 후세를 위해 아껴 쓰고 저축하여 돈을 모은 사람들은 상속세를 낸다면 과연 합당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아끼고 저축하지 말고 다 써 버려라 는 동기를 부여하게도 된다는 것이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다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이미 세금을 다 낸 재산을 국가가 상속세를 통해 개인의 자산을 이중적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불합리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는 누구나 상속세를 내야 되는 현실이 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속세와 관련한 향후 개선사항들을 추가로 제시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개편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개인의 상속세를 조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우리나라 개인의 상속세 공제 한도 금액 조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우리나라 개인은 상속세제 중 부부간 상속세 공제 타당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우리나라 개인의 상속세제 중 유산취득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우리나라 개인의 상속세제 중 납부할 세금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기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6. 우리나라 개인의 상속세제 중 부동산 매도 시 과세하는 과세이연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3. 연구 방법

###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상속세에 관한 개인적 인식에 관한 연구로 우리나라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부유층, 중산층 및 서민층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면대면 설문조사이다. 설문 응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여론을 분석하였다. 설문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면대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유층, 중산층과 서민층의 의견이 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부촌과 빈촌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 주요 도시 거주 성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무작위 표본조사로 1대 1 오프라인 서면 면접법으로 조사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3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68명(여자 204명, 남자 26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16) 2021매일경제신문자료:한국경제연구원통계(세계평균 1~2%, 상속세는 부유세 개념)

17)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45억(전용84㎡)등, KB부동산 시세 참조

18) 소득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및 증부세 등으로 이미 세금을 낸 것

### 3.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개인별 상속세 인식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교차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면대면 설문조사로서,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의문 사항을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함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함으로서 응답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응답하여 자료의 가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구 시 상주한 부산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가능한 전국(주요 설문지역: 서울·경기·인천·부산)을 주요 대상으로 한 분석 자료의 수집은 편중된 자료가 아닌 다소 광범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는 질의 응답식 설문이 가장 적합하다 사료 되었다. 설문의 문항 구조상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외 다른 분석방법을 채용하기 어려웠지만, 두 가지 분석만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빈도분석은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혼인, 연 소득, 형제·자매 수, 직업, 소유재산, 상속 경험, 상속세 납부 경험, 상속세 폐지 여부, 유지 시 현행 또는 개선유지 여부, 상속세 수용 가능 세율, 공제 한도 상향 여부, 유지 시 희망 공제한도액, 부부간 상속세 폐지 여부,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외국대비 높다,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 연부연납제도 기간확대 여부, 과세 이연제도 도입 여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교차분석은 성별, 상속세 폐지 여부~과세 이연제도 도입 여부까지, 연령 별, 상속세 폐지 여부~과세이연 제도 도입 여부까지, 이런 패턴으로 마지막 상속납부 경험 별, 상속세 폐지 여부~과세이연 제도 도입 여부까지로 각각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하였다.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별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의 경우 상속세 50%가 높은지의 여부, 연구문제 2의 경우 공제 한도를 확대 여부, 연구문제 3의 경우 부부간 상속세 폐지 여부, 연구문제 4의 경우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 선호 여부, 연구문제 5의 경우 연부연납제도 기간확대 여부, 연구문제 6의 경우 과세이연 제도 도입 여부, 모두 성별,

연령 별.....상속세 신고납부 경험 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인구·통계적 빈도분석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속세제 인식에 대한 인구통계 변수별 빈도(명), 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 결과가 Table 1 및 Table 2 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1.1 인구 사회학적 기초자료 분석

첫째, 전체 응답자 중 남자 43.6%(204명), 여자 56.4%(264명)로 상대적으로 여자가 60명이 많았다. 연령대별 응답자 현황을 보면 20대는 5.1%(24명), 30대는 9.0%(42명), 40대는 24.4%(114명), 50대는 48.7%(228명), 60대 이상은 12.8%(60명)로 전체 응답자의 약 73.1%가 40대와 50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분들의 연령이 40~50대가 되면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게 되는 시기라 40대는 상속에 대해 생각을 할 연령대이고, 50대는 상속을 받을 연령대라 본 연구 논문의 설문에 가장 최적화된 그룹으로 사료 된다. 둘째, 설문 응답자의 학력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고졸 12.8%(60명), 전문대졸 11.5%(54명), 대졸 60.3%(282명), 대학원 졸 15.4%(72명)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75.7%(354명)로 조사되었다. 이는 e-나라지표 국민교육 수준(학력별 인구분포)<sup>19)</sup>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고등교육 이상 이수자가 51%에 달한다는 조사결과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학력 대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셋째, 설문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 15.4%(72명), 수도권 14.1%(66명), 광역시 66.7%(312명), 중소도시 2.6%(12명), 농어촌 기타 1.3%(6명)이 참여하였다. 이는 본 연구자가 연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연구 설문 조사를 직접 서울·경기·인천을 2번 방문해 면담하였고, 설문응답자 중 광역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연구 기간 중, 연구자의 주 상주지가 부산이라 부산 지역 거주자의 응답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기혼자와 미혼자는 기혼 83.3%(390명), 미혼 16.7%(78명)로 상대적으로 기혼이 미혼보다 312명이

19) 각 년도 OECD「Education at a Glance」, 조사대상: 25-64세 연령인구 기준, e-나라지표, 2021.

많았다. 이는 설문대상을 혼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이기도 하고 설문에 응한 응답자가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설문응답자의 연 소득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5천만 원 미만이 30.8%(144명), 1억 원 미만이 60.3%(282명), 2억 원 미만이 2.6%(12명), 3억 원 미만이 3.8%(18명), 3억 원 이상이 2.6%(12명)로 1억 원 미만의 연 소득자가 91.1%(426명)로 조사되었다. 이는 설문응답자들의 평균 소득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형제자매 수와 관련된 설문에서는 나 혼자 2.6%(12명), 2인 26.9%(126명), 3인 29.5%(138명), 4인 26.9%(126명), 5인 이상은 14.1%(66명)로 조사되었다. 이는 무작위 표본조사이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 가구

의 보통의 자녀 수를 다소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설문응답자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직장인이 59.0%(276명), 자영업자 23.1(108명), 기타 17.9%(84명)로 조사되었다. 이는 설문응답자 중에서 직장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설문응답자의 소유재산은 5억 원 이하가 29.5%(138명), 5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7.4%(222명), 3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는 20.5%(96명),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는 2.6%(12명)로 30억 원 이하 재산소유자가 76.9%(360명)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 연구자가 무작위로 설문한 결과이기도 하고, 설문에 응한 직업군을 보면 대부분이 직장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로 구성된 점, 본 연구자의 주 설문 장소가 지방인 부산이었다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Table 1. Population and Statistical Frequency Analysis

population and statistics variable	Sortation	Frequency (Number)	Percentage	M(SD) value
Gender	Man	204	43.6	1.56( .496)
	Woman	264	56.4	
age	20s	24	5.1	3.55( .997)
	30s	42	9.0	
	40s	114	24.4	
	50s	228	48.7	
	people in their 60s and older	60	12.8	
level of education	a high school graduate	60	12.8	3.78( .858)
	a junior college graduate	54	11.5	
	a college graduate	282	60.3	
	a graduate student	72	15.4	
Residential area	Seoul	72	15.4	2.60( .823)
	capital area	66	14.1	
	Metropolitan City	312	66.7	
	small and medium-a small town	12	2.6	
marriage	Rural and fishing villages and others	6	1.3	1.17( .373)
	Married	390	83.3	
an annual income	Single	78	16.7	1.87( .838)
	less than 50 million won	144	30.8	
	Less than 100 million won	282	60.3	
	Less than 200 million won	12	2.6	
	Less than 300 million won	18	3.8	
the number of siblings	300million won or more	12	2.6	3.23(1.074)
	alone	12	2.6	
	Two people	126	26.9	
	Three people	138	29.5	
	Four people	126	26.9	
job	more than 5 people	66	14.1	1.95(1.486)
	office worker	276	59.0	
	Self-employed	108	23.1	
one's property	Other	84	17.9	1.96( .776)
	Less than 500 million won	138	29.5	
	Over 500 million won	222	47.4	
	Less than 3 billion won			
Over 3 billion won not more than 10 billion won	96	20.5		
Over 10 billion won	12	2.6		
50 billion won or less				

## 4.1.2 상속세에 대한 개인 인식 분석

첫째, 상속받아 본 경험으로는 경험 있다가 32.1%(150명), 경험 없다가 67.9%(318명)로 조사되었다. 현재는 장자 상속 문화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설문응답자 중 장자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상속재산이 크지 않고 장자가 제사를 모시는 문화가 아직까지도 다소 남아 있어 장자 상속이 많았었고 큰 재산의 상속 외에는 장자 외의 상속이 드물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한 경험 여부는 경험 있다가 6.4%(30명), 경험 없다가 93.6%(438명)로 나타났다. 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억은 큰 재산 축에 들어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요 도시 30평대 괜찮은 아파트만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10억 이상의 재산소유자가 되었다. 상속세 폐지 유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폐지해야 한다, 56.4%(264명), 유지해야 한다, 43.6%(204명)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자와의 설문 중 응답자가 그동안 남이 일로만 생각했던 상속세율과 공제 한도 등 우리나라 상속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세율에 대한 부담과 저항이 많았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상속세 유지 시 현행 유지 또는 개선유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현행 유지가, 3.8%(18명), 개선유지가 96.2%(450명)로 조사되었다. 이는 임금인상 물가상승 자산 인플레이 등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은 올랐는데, 1999년 상속세제 개정 이후 20년이 넘도록 변함이 없는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 사료 된다.

둘째, 상속받은 재산의 과다를 불만하고 누구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설문 응답자가 수용할 수 있는 상속세 세율에 대한 설문에서는 10% 미만인 64.1%(300명), 10~30% 미만 26.9%(126명), 30~40% 미만 6.4%(30명), 40~50% 미만은 응답자 무, 50% 이상은 2.6%(12명)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중 64.1%가 10% 미만 세율로 세금을 내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세금은 적게 내고 싶다는 것이다.

셋째,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문에서는, 그렇지 않다 7.7%(36명), 보통이다, 14.1%(66명), 그렇다 33.3%(156명), 매우 그렇다 44.9%(210명)로 전체 응답자의 78.2%(366명)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임금인상 물가상승 자산 인플레이 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속세제 전반에 대한

인식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부부간 상속세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유지해야 한다, 12.8%(60명), 폐지해야 한다, 87.2%(408명)로 조사되었다. 이는 상속세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부부간은 공동 형성재산개념으로,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부간 상속세는 법 제정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속세율 최고 50%는 높다 그렇다 77%(360명), 그렇지 않다 15.4%(72명)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50%)이 OECD 평균(25%)<sup>20)</sup>보다 크게 높기 때문이다. 넷째, 유산세 제와 유산취득 세제에 대한 설문에서는, 현행 유산세 제를 유지해야 한다, 11.5%(54명), 유산 취득세 제로 개선해야 한다, 88.5%(414명)로 조사되었다.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유산세는 총 유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고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니 총 상속세금이 적게 된다는 점에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쪽을 선호했다. 또한, 연부연납제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현행대로 10년간 나누어 내야 한다, 21.8%(102명), 10년이 아닌 상속자들이 담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늘려주어야 한다, 78.2%(366명)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가구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점을 볼 때 현금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구가 많지 않아 세금이 많을 시, 가능한 나누어 낼 수 있는 쪽을 선호하였다. 이에 더하여, 과세이연 제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현행유지, 11.5%(54명), 과세이연 제도 도입으로 개선해야 한다, 88.5%(414명)로 조사되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구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점을 볼 때, 재산을 팔아 상속세를 내게 되면 상속인들은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터전에서 떠나야 할 수도 있다. 상속인이 살다가 상속재산 매도 시 납부 할 수 있기를 선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설문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기초자료 분석결과는 연령대는 실제 상속에 관련된 연령대인 40~50대가, 학력은 우리나라 평균 학력인 대졸, 혼인별로는 기혼자, 연 소득은 1억 원 미만, 직업별로는 직장인, 소유재산은 30억 원 이하가 다수를 차지했다. 상속세에 대한 개인 인식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개인의 상속세에 대한 인식은 1) 상속 경험은 많지 않은 결론

20)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낮추고 과세구간 3단계로 간소화」, 한국세정신문, 2022.06.17.



조사되었으며, 2) 상속세 납부 경험도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 기존의 상속세 제도는 폐지해야 하지만, 폐지가 어려울 경우, 현행 상속세 제도를 개선하여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더하여, 4) 만약 본인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금액을 부담하고 싶으며, 이를 위해 연부연납제도의 기간확대 및 과세이연 제도의 도입을 선호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상속세 폐지 혹은 유지, 유지 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및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까지도 도출되었다. 따라서 다음 장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우리나라 상속제도 개선의 개인적 인식에 대한 통합적 내용 및 새로운 개선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2. Population and Statistical Frequency Analysis

population and statistics variable	Sortation	Frequency (Number)	Percentage	M(SD) value
inherited experience	have inherited experience	150	32.1	1.68( .467)
	have no inherited experience	318	67.9	
Inheritance tax payment experience	have experience paying inheritance tax	30	6.4	1.94( .245)
	have no experience of paying inheritance tax	438	93.6	
Whether to abolish inheritance tax	must be abolished	264	56.4	1.44( .496)
	have to maintain it	204	43.6	
If you keep the inheritance tax, Will it be maintained or improved? whether to maintain	the present maintenance	18	3.8	1.96( .193)
	Improvement maintenance	450	96.2	
If a survey respondent has to pay inheritance tax, what percentage of the tax rate do you think is acceptable?	Less than 10%	300	64.1	1.50( .829)
	Less than 10% to 30%	126	26.9	
	Less than 30% to 40%	30	6.4	
	More than 50%	12	2.6	
Restrictions on inheritance tax deductions should also be raised	don't think so	36	7.7	4.15( .936)
	be normal	66	14.1	
	deduction limit should be raised	156	33.3	
	need to raise the deduction limit a lot	210	44.9	
If the inheritance tax in Korea is improved and maintained, what amount of the inheritance tax deduction limit is appropriate?	The current 3.7 billion won Less than 4 billion	54	11.5	3.03(1.262)
	Less than 4 to 7 billion	120	25.6	
	Less than 7-10 billion	138	29.5	
	Less than 10 to 30 billion	72	15.4	
	Less than 30 to 50 billion	84	17.9	
Whether the inheritance tax between couples is maintained or abolished	The inheritance tax between husband and wife should be maintained	60	12.8	1.87( .335)
	The inheritance tax between husband and wife should be abolished	408	87.2	
The highest inheritance tax rate in Korea is 50 percent high	Korea's highest inheritance tax rate of 50% is not high at all.	24	5.1	4.09(1.212)
	Korea's highest inheritance tax rate of 50 percent is not high.	48	10.3	
	Korea's highest inheritance tax rate of 50 percent is similar to that of foreign countries.	36	7.7	
	Korea's highest inheritance tax rate of 50 percent is high.	114	24.4	
	Korea's highest inheritance tax rate of 50 percent is very high.	246	52.6	

(Continued)

Table 2. Population and Statistical Frequency Analysis

population and statistics variable	Sortation	Frequency (Number)	Percentage	M(SD) value
Korea's inheritance tax rate of up to 50% is higher than that of foreign countries	The maximum inheritance tax rate of 50% in Korea is not higher than in foreign countries.	6	1.3	4.14( .998)
	The maximum inheritance tax rate of 50% in Korea is not higher than in foreign countries.	42	9.0	
	The highest inheritance tax rate in Korea is similar to that of foreign countries	42	9.0	
	The highest inheritance tax rate in Korea is 50% higher than in foreign countries.	168	35.9	
	The maximum inheritance tax rate of 50% in Korea is much higher than in foreign countries.	210	44.9	
If the aximum inheritance tax rate in Korea is maintained at 50%. Even if you charge 50% of the maximum tax rate, The desired tax base amount that is onsidered possible	the current 3 billion plus	42	9.0	3.31(1.315)
	more than 7 billion won	96	20.5	
	More than 10 billion won	138	29.5	
	more than 30 billion won	60	12.8	
	More than 50 billion won	132	28.2	
estate tax and estate acquisition tax system	under the current estate tax You have to maintain it	54	11.5	1.88( .320)
	The estate acquisition tax system should be improved	414	88.5	
Annual installment payment system	have to split it out for 10 years as it is	102	21.8	1.78( .413)
	Even if it's more than 10 years It should be extended so that it can be paid according to the heir's ability to pay taxes	366	78.2	
tax deferral system	object to the introduction of the tax deferral system	54	11.5	1.88( .320)
	tax deferral system have to be introduced	414	88.5	
계		468	100.0	

4.2 교차분석

4.2.1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

설문응답자의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직업별 상속세 최고세율 50% 높다 에 관한 카이제곱 검정은 1% 유의 범위에서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직업 불문 상속세 최고세율 50% 높다. (매우) 그렇다, 77%(360명)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상속세 최고세율 50% 높다, (매우) 그렇다, 직장인 73.9%(204명), 자영업자 77.8%(84명), 기타 85.8%(72명)로 나타났다.

4.2.2 연구문제 2의 분석 결과

설문응답자의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성별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할 시 수용 선호도에 관한 카이제곱 검정은 1% 유의 범위에서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성별 불문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 (매우) 그렇다 78.2%(366명)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 (매우) 그렇다, 여자 77.3%(204명), 남자는 79.4%(162명)로 나타났다.

4.2.3 연구문제 3의 분석 결과

설문응답자의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혼인 여부 별 상속세 배우자공제 유지 또는 폐지 선호도에 관한 카이제곱 검정은 1% 유의 범위에서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5과 같다. 혼인 여부 불문 상속세 배우자공제 유지 또는 폐지 여부 조사에서 폐지해야 한다, 87.2%(408명)로 나타났다. 혼인 여부 별로는 부부간 상속세 폐지해야 한다. 기혼 89.2%(348명), 미혼 76.9%(60명)로 나타났다.

4.2.4 연구문제 4의 분석 결과

설문응답자의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학력별 상속세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 선호도에 관한 카이제곱 검정은 1% 유의 범위에서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학력 불문 유산 취득세 제로 개선해야 한다, 88.5%(414명)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 91.7%(66명), 대졸 87.2%(246명), 전문대졸 100.0%(54명), 고졸 80.0%(48명)로 유산 취득 세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5 연구문제 5의 분석 결과

설문응답자의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소유재산

별 연부연납제도 기간 선호도에 관한 카이제곱 검정은 1% 유의 범위에서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소유재산과 관계없이 연부연납제도 납부 기간확대를 선호하였다. 소유재산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이하에서는 10년 이상 기간확대 필요 100%(12명), 소유재산 30~100억 원 이하 87.53%(84명), 소유재산 5~30억 원 이하 78.4%(174명), 소유재산 5억 원 이하에서는 69.6%(96명)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6. 연구문제 6의 분석 결과

설문응답자의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소유재산 별 과세이연 제도 도입 여부 선호도에 관한 카이제곱 검정은 1% 유의 범위에서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전 연령층 조사결과 과세이연 제도 도입해야 한다, 88.5%(414명)로 조사되었다. 연령 별로는 60대 이상 80.0%(48명), 50대 94.7%(216명), 40대 89.5%(102명), 30대 57.1%(24명), 20대 100%(24명)로 나타났다.

Table 3. The maximum inheritance tax rate by occupation is 50% high

Sortation		The highest inheritance tax rate in Korea is 50 percent high					whole
		Korea's highest inheritance tax rate of 50% is not high at all.	Korea's highest inheritance tax rate of 50 percent is not high.	Korea's highest inheritance tax rate of 50 percent is similar to that of foreign countries.	Korea's highest inheritance tax rate of 50 percent is high.	Korea's highest inheritance tax rate of 50 percent is very high.	
office worker	Frequency(Numbrer)	6	36	30	54	150	276
	Percentage (%)	2.2%	13.0%	10.9%	19.6%	54.3%	100.0%
Self-employed	Frequency(Numbrer)	12	12	0	24	60	108
	Percentage (%)	11.1%	11.1%	0.0%	22.2%	55.6%	100.0%
Other	Frequency(Numbrer)	6	0	6	36	36	84
	Percentage (%)	7.1%	0.0%	7.1%	42.9%	42.9%	100.0%
Sum	Frequency(Numbrer)	24	48	36	114	246	468
	Percentage (%)	5.1%	10.3%	7.7%	24.4%	52.6%	100.0%
$\chi^2 (p)$		52.109*** (0.000)					

Note: \*\*\*, \*\*, and \* mean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 and 5% and 10%, respectively.

**Table 4. The limit on gender inheritance tax deductions should be increased preference**

Sortation		Restrictions on inheritance tax deductions should also be raised				whole
		don't think so	be normal	deduction limit should be raised	need to raise the deduction limit a lot	
Man	Frequency(Numbe r)	24	18	84	78	204
	Percentage (%)	11.8%	8.8%	41.2%	38.2%	100.0%
Woman	Frequency(Numbe r)	12	48	72	132	264
	Percentage (%)	4.5%	18.2%	27.3%	50.0%	100.0%
Sum	Frequency(Numbe r)	36	66	156	210	468
	Percentage (%)	7.7%	14.1%	33.3%	44.9%	100.0%
$\chi^2 (p)$		25.166*** (0.000)				

Note: \*\*\*, \*\*, and \* mean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 and 5% and 10%, respectively.

**Table 5. Preference for maintaining or abolishing inheritance tax spouse deductions by marriage**

Sortation		Whether the inheritance tax between couples is maintained or abolished		whole
		The inheritance tax between husband and wife should be maintained	The inheritance tax between husband and wife should be abolished	
Married	Frequency(Numbe r)	42	348	390
	Percentage (%)	10.8%	89.2%	100.0%
Single	Frequency(Numbe r)	18	60	78
	Percentage (%)	23.1%	76.9%	100.0%
Sum	Frequency(Numbe r)	60	408	468
	Percentage (%)	12.8%	87.2%	100.0%
$\chi^2 (p)$		8.809*** (0.003)		

Note: \*\*\*, \*\*, and \* mean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 and 5% and 10%, respectively.

**Table 6. Preference for inheritance tax and inheritance acquisition tax by educational background**

Sortation		estate tax and estate acquisition tax system		whole
		under the current estate tax You have to maintain it	The estate acquisition tax system should be improved	
a high school graduate	Frequency(Numbe r)	12	48	60
	Percentage (%)	20.0%	80.0%	100.0%
a junior college graduate	Frequency(Numbe r)	0	54	54
	Percentage (%)	0.0%	100.0%	100.0%
a college graduate	Frequency(Numbe r)	36	246	282
	Percentage (%)	12.8%	87.2%	100.0%
a graduate student	Frequency(Numbe r)	6	66	72
	Percentage (%)	8.3%	91.7%	100.0%
Sum	Frequency(Numbe r)	54	414	468
	Percentage (%)	11.5%	88.5%	100.0%
$\chi^2 (p)$		12.393*** (0.006)		

Note: \*\*\*, \*\*, and \* mean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 and 5% and 10%, respectively.

Table 7. Preference for the period of annual payment of inheritance tax by ownership property

Sortation		Annual installment payment system		whole
		have to split it out for 10 years as it is	Even if it's more than 10 years It should be extended so that it can be paid according to the heir's ability to pay taxes	
Less than 500 million won	Frequency(Numbrer)	42	96	138
	Percentage (%)	30.4%	69.6%	100.0%
Over 500 million won Less than 3 billion won	Frequency(Numbrer)	48	174	222
	Percentage (%)	21.6%	78.4%	100.0%
Over 3 billion won not more than 10 billion won	Frequency(Numbrer)	12	84	96
	Percentage (%)	12.5%	87.5%	100.0%
Over 10 billion won 50 billion won or less	Frequency(Numbrer)	0	12	12
	Percentage (%)	0.0%	100.0%	100.0%
Sum	Frequency(Numbrer)	102	366	468
	Percentage (%)	21.8%	78.2%	100.0%
$\chi^2 (p)$		14.258*** (0.003)		

Note: \*\*\*, \*\*, and \* mean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 and 5% and 10%, respectively.

Table 8. Preferenc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inheritance tax deferral system by age

Sortation		tax deferral system		whole
		object to the introduction of the tax deferral system	tax deferral system have to be introduced	
20s	Frequency(Numbrer)	0	24	24
	Percentage (%)	0.0%	100.0%	100.0%
30s	Frequency(Numbrer)	18	24	42
	Percentage (%)	42.9%	57.1%	100.0%
40s	Frequency(Numbrer)	12	102	114
	Percentage (%)	10.5%	89.5%	100.0%
50s	Frequency(Numbrer)	12	216	228
	Percentage (%)	5.3%	94.7%	100.0%
people in their 60s and older	Frequency(Numbrer)	12	48	60
	Percentage (%)	20.0%	80.0%	100.0%
Sum	Frequency(Numbrer)	54	414	468
	Percentage (%)	11.5%	88.5%	100.0%
$\chi^2 (p)$		56.610*** (0.000)		

Note: \*\*\*, \*\*, and \* mean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 and 5% and 10%, respectively.

##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분석하여 상속세 제도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를 폐지할 것인가 또는 유지할 것인가를 먼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세 제의 개인적 인식을 연구 문제 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을 중심으로 방문 조사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22년 09월 10일부터~2022년 10월10일 까지이다. 수집된 설문자료를 기반으로 SPSS Statistics 25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문제 1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상속세율 최고 50%는 높다, 그렇다 77%(360명), 그렇지 않다 15.4%(72명), 기타 7.7%(36명)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50%)이 OECD 평균(25%)보다 크게 높기 때문이다. 이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명목 최고세율로 보면, 위와 같이 OECD 평균 최고세율 25%, 세계 최고라는 일본이 55%로 우리나라 50%보다 높으나, 실효세율로 보면 일본은 12.5%(각종 공제 多), 우리나라 35.1%보다 적다.<sup>21)</sup>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에서 살펴본 상속세율은 대폭 적으로 하향 조절함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 그렇다 78.2%(366명), 그렇지 않다 7.7%(36명), 기타 14.1%(66명)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년이 넘는 동안 임금인상 물가상승 자산 인플레이, 집값 상승은 계속되었는데 상속세제는 변동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제금액을 인지한 결과치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 2에서 살펴본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3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부부

간 상속세는 폐지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87.2%(408명), 유지해야 한다, 12.8%(60명)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원종학(2012) 외 2인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 3에서 살펴본 부부간 상속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타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4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유산 취득세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 88.5%(414명), 그렇지 않다 11.5%(54명)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 [최명근 (2002)의 연구]에서 유산 취득세의 장점을 설명한 바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부과하는 것이라 세율이 높아 납부 할 세금이 일반적으로 크다. 유산취득 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 하는 방식으로 상속금액이 분산되면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라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 4에서 살펴본 유산 취득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타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연구문제 5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연부연납제도 기간을 늘려야 한다, 그렇다 78.2%(366명), 그렇지 않다 21.8%(102명)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를 낼 만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많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대부분은 상속세를 은행에서 대출해 납부하고 있다 한다.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맞게 상속세 납부기간을 보다 더 탄력적으로 늘려야 할 이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 5에서 살펴본 연부연납제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연구문제 6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과세이연 제도 도입, 도입해야 한다, 88.5%(414명), 도입에 반대한다, 11.5%(54명)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 배우자나 자식이 거주하다가, 매도 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기업에 시행 하고 있는 과세이연 제도의 좋은 취지를 개인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 6에서 살펴본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

21) 위의 자료 p.1.

인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는 부유세 개념으로 전 국민의 1~2%가 내는 세금으로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 허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인다. 2021년 매일경제신문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가구의 40%(39.9%)에 가까운 가구가 상속세 납부 대상 가구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2025년에는 60%에 달하는 가구가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통계는, 우리나라 상속세 제의 현실을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한다.

둘째,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과도한 상속세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신속히 세율은 낮추고, 공제 한도는 높이고, 배우자공제는 폐지하고, 유산취득 세제로 전환해 줄 것을 대다수의 설문응답자들은 의견을 피력했다.

셋째, 임금인상과 물가상승, 급격한 자산가격상승으로, 이와 같이 많은 가구에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가구의 대다수는 상속세를 납부 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자산을 상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사례에서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납부했다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런 실정을 고려해 연부연납제도가 2022년에 그나마 5년에서 10년으로 개선 되었지만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맞게,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크다면, 10년 한도로 강제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연부연납제도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정년퇴직으로 소득은 내려가고, 생활은 어려워졌는데,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아야 할 집이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급격히 상승한 상태에서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현금은 없고 집을 팔아서 납부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살던 생활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물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라고 가업 상속기업과 같이 일반 국민들도 과세이연 제도의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면대면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기법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광범

위하게 사용되는 주요 변인이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회귀분석모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추가 연구에서는 개인적 인식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영향을 명확히 구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속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체집단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실제 상속의 경험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이 집단을 연령대별로 확대하여 개인적 인식이 연령과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한 개인적 인식에 대한 포괄적 연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상속세 제도의 개인적 인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상속세 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설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진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향후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에 개인적 인식 차원에서 상속제도의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REFERENCES

- [1] I. H. Hwang, M. J. Lee & W. S. Yoon. (2017). The U.S. corporation lowers inheritance tax Korea reverse driving. *Maeil Economy*. December 3.
- [2] Y. C. Kim & Y. H. Lee. (2009). *Germany's side of the tax system in major countries & IBFD (2016 reorganization)*. Seoul : Korea Institute of Taxation.
- [3] J. W. Yeom. (2020). *Discussion on ways to normalize inheritance tax seen again*. Tax Daily. December 25.
- [4] T. R. Lee & M. S. Han. (2016). *Lecture on Tax Law*. Park Young-sa. p.723.
- [5] M. G. Choi. (2002). A Study on the Transition and Rationalization of Inheritance Tax Types.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p.217.
- [6] S. W. Park. & R. Y. Jeong. (2009). A Study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Yonsei Global Business Lau Review*, p. 38-39
- [7] J. G. Lee. (2010).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Determination of Inheritance and Gift Tax Obligatio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8] J. H. Won, H. M. Lee & S. Y. Hong. (2012). The Status and Recent Trends of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in Major Countries. *Korea Tax Research Institute*. p.113.
- [9] H. Y. Ahn & H. Park. (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Institution in the Transition of Inheritance Tax System. *Tax Studies*. p.82
- [10] J. H. Kim (2021). It's not about inheritance". Four years later, 60 percent of apartments in Seoul will be taxed. *Maeil Economy*, October 25.
- [11] M. G. Choi (2006). Rational Reorganization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pp.15-22.
- [12] B. G. Choi, I. J. Choi & Y. G. Yoo. (2008). Inheritance and Gift Tax Practice. Korea Tax Society, p.32.
- [13] Planning Policy Team. (2014).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Implications of Inheritance Gift Tax System.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March 28, 2014.

**박 영 배(Young Bae, Park) [정회원]**



- 1992년 :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경제학박사)
- 1996년 ~ 현재: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국제금융(International Money, Banking & Finance), 디지털금융(Digital Finance), 금융정보시스템(Financial Information System) 등
- E-Mail : ybpark@due.ac.kr

**윤 귀 태(Gui Tae, Yun) [정회원]**



- 2020년 ~ 현재: 동의대학교 대학원 금융보험 재무부동산학과 금융보험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국제금융(International Money, Banking & Finance), 디지털금융(Digital Finance), 금융정보시스템(Financial Information System) 등

- E-Mail : 6081ty@hanmail.net